

이므로, 이러한 변경은 키 소지인이 사후에 운송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운송인의 사전 受諾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하인의 변경을 포함하여 합의된 모든 변경 결과를 e-B/L상에 반영하는 것, 즉 e-B/L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은 선하증권의 작성·발행의무자인 운송인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대체 운송증권의 이용방향

본 논문에서 기존선하증권의 대체 수단으로서 SWB과 e-B/L을 논급하고 있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는 운송증권 전체를 이중 어느 한 가지 만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또 종이선하증권을 완전 배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에서는 강행법으로 종이선하증권이외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무역거래당사자 중에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구비가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다, 운송기간이 긴 지역과의 거래인 관계로 선하증권의 전자화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전자식 선하증권이 국제무역운송에서 자리 매김을 하더라도 종이선하증권은 장기간 병존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운송 중에 화물이 轉賣되지 않고 대금의 결제에 문제가 없는 거래는 SWB을 사용하고, 전매되는 경우와 은행이 담보를 요하는 신용장거래의 경우 등에 한하여 선하증권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이선하증권과 e-B/L이 사용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도 전체 또는 부분적(예, 특정국가 간, 특정당사자간 등)으로 전자적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 운송증권을 전자식으로 전환하여 무역거래의 모든 서류의 흐름을 무서류(paperless)화하여 무역운송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 가야 할 것이다.

4.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消費者保護에 관한 研究

해사법학과 고형석
지도교수 신종철

과학기술의 발전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으며, 그 속도와 범위는 인류의 예상을 초월하여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혁명적인 거래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기초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변화의 출발점에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게 될 것이고, 인류는 변화의 이점을 향유하기 보다는 변화에 대하여 거부 또는 저항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완책으로는 제도의 개선, 법령체계의 확립 및 법령의 개정·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피해구제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소송을 통한 방식이나 이는 소비자 등에게 시간, 경제적인 면에서 또 다른 피해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

적 분쟁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의 대표적인 예가 조정제도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간이한 방식에 의한 절차참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한 분쟁해결절차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모든 조정위원회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구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일정기간동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조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의 효력에 있어서도 조정위원회에 따라 재판상 화해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성립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양자를 구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정의 효력을 통일적으로 재판상 화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법령체계의 확립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차원이 아닌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은 사업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소비자에게 무조건적인 철회권을 부여하는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의 규정이 상호 모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지침의 규정을 개정함과 더불어 법령의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자에게 소비자보호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현행법령은 전자상거래의 도입이전 또는 활성화 이전에 제정되어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전자상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전자거래 기본법」 등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함께 규율하고 있으나 양자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양자를 공동으로 규율할 경우에 있어서도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명확히 구별하여 각각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2) 가상공간에서의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의 규정은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다음의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 소비자에 대한 사후통지의무를 사전통지의무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인식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시 법정대리인에 대한 정보요청을 부정하고 법정대리인이 직접 동의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동의요청시 사업자가 제공할 정보에는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첨가되어야 하며, 사업자의 과도한 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한할 수 있는 정보수집제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에게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가 이를 재차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야 한다.
- (3) 사업자가 법령상의 행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를 이

행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자의 행위의무는 크게 표시의무와 제공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업자가 표시하여야 할 신원에 관한 사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현실적인 영업망을 갖춘 사업자와 이를 갖추지 않는 사업자를 구분하여 표시사항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마크를 부착한 쇼핑몰의 경우에는 온라인마크 부여기관과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여부, 쇼핑몰의 등록국가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품 등과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제조업자의 신원, 상품 등의 원산지 또는 제조장소 및 배송지역, 관세 등과 같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에 그 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 금액 등을 표시함과 더불어 외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에 대하여 그 나라의 언어 또는 복수의 언어로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제공의무로써 사업자는 약관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체결한 경우에 소비자에게 약관을 명시, 교부 및 설명하여야 하며, 이는 소비자가 약관을 복사 또는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도 상기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4) 전자상거래의 체결은 사업자와 어떠한 접촉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소비자가 청약을 하게 되므로 다른 거래형태보다 무분별한 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구매의사변경과 같은 개인적인 자유에서도 소비자가 일정기간내에 아무런 부담을 받지 않고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청약철회권제도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동법안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자유에 의한 청약철회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안에서는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청약철회권행사기간의 기산점에 있어서 사업자의 주소 등을 소비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안 제16조 제1항 3호의 규정을 이 경우에도 적용하는 준용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약철회권행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상품 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서 그 사실을 알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약철회에 관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기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 (5) 대금지급 또는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가 표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투명한 경제질서의 확립방안 중 하나인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현금거래와 신용카드거래의 차별을 폐지함과 더불어 철회권행사에 따른 대금반환의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환불에 있어서 소비자를 배제한 사업자와 신용제공자간의 문제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즉,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고, 이 사실을 신용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신용제공자는 대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사업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6)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자 등에게 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그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인 위법행위, 귀책사유, 인과관계 등의 입증책임을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명무실하게 되므로 사업자 등의 행위에 과실을 추정하거나 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책임원칙의 도입이 요구된다.